

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1. 12. 9.>  
수수료의 산정기준(제12조제1항 관련)

1. 항목별 금액

| 구분     | 금액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|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
|--------|---|---------|------|-------|---|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
| 가. 인건비 |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기타부문 특급기술자 임금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하나의 기업에 여러 사업장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아래 보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|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
|        |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사업장수(N)</th> <th>보정계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 ~ 2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0.8</td> </tr> <tr> <td>4 ~ 15</td> <td><math>0.8 - [(N - 3) \times 0.03]</math></td> </tr> <tr> <td>16 이상</td> <td>0.44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사업장수(N) | 보정계수 | 1 ~ 2 | 1 | 3 | 0.8 | 4 ~ 15 | $0.8 - [(N - 3) \times 0.03]$ | 16 이상 | 0.44 |
|        | 사업장수(N)   | 보정계수    |      |       |   |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
|        | 1 ~ 2   | 1       |      |       |   |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
|        | 3   | 0.8     |      |       |   |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
| 4 ~ 15 | $0.8 - [(N - 3) \times 0.03]$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|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
| 16 이상  | 0.44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|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
| 나. 경비  | 가목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의 130퍼센트로 산정한다. 다만,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인증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부과하지 않는다.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|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
| 다. 출장비 | 인증평가원 1인당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고, 출장기간은 현장평가에 필요한 일수로 한다.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|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

2. 인증평가 소요 기간

| 인증평가 대상 업체<br>종업원 수(인) | 인증평가 소요 기간(일) |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문서평가          | 현장평가 | 총 평가일수 |
| 1 ~ 99 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| 3    | 4      |
| 100 ~ 199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| 4    | 5      |
| 200 ~ 625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| 5    | 6      |
| 626 ~ 875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| 6    | 7      |
| 876 ~ 1175             | 2             | 6    | 8      |
| 1176 ~ 2000            | 2             | 7    | 9      |
| 2001 ~ 4000            | 3             | 8    | 11     |
| 4001 이상                | 3             | 10   | 13     |

가.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과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문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, 총 평가일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로 현장평가만 실시한다.

나.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새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.